

#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보조인력 채용 재공고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보조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2개분야, 총 7명)

○ 채용인원: 총 9명

순번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 예정부서(근무지)	담당업무
1	행정보조	1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성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 회계처리 등 업무보조, 상담지원 등</li> <li>그 외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업무지원 등</li> </ul>
2		1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부천시)	
3		1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정부시)	
4		1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남양주시)	
5	행정보조 또는 돌봄보조	1	경기남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행정업무 및 돌봄 보조 등</li> <li>그 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관련 업무 지원 등</li> </ul>
6		1	경기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부천시)	
7		1	경기북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정부시)	

○ 신 분: 돌봄종사자의 행정(돌봄)사무를 보조하는 근로자

○ 계약기간: 임용일 ~ 2026. 12. 31.

○ 보 수: 시급 10,320원, 월2,156,880원

- 경기도생활임금, 경기도공정수장 적용대상 제외: 경기도 노동정책과-5799(2026.04.22.)호

※경기도생활임금: 중앙지침에 따라 전국동일기준 사업수행 노동자 적용대상에서 제외

※경기도공정수당: 국비 등 전국 공통으로 별도지침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국가사업으로  
노인복지과와 협의를 통해 미지급 결정

- 급식비, 복리후생(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미 지원

※2026년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보조 인력지원 사업 안내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시설별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2 응시자격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제1항 제1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 시험가산 특전(우대조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근무지	대상	가점	비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1급, 2급)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면접전형 8%	자격 사항은 1개만 인정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1급, 2급), 요양보호사,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5~10%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 택일
	장애인	면접전형 5%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생존장병은 각 시험(서류, 면접)만점의 3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서류, 면접)별 득점에 각 시험(서류, 면접)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일 경우 적용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장애인 가산점 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각 시험(서류, 면접)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장애인 가산점 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1급, 2급, 요양보호사 자격·면허 소지자에게 면접전형 시 만점의 8% 가산점의 부여되며 복수의 자격·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도 부여되는 가산점은 동일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과 중복 적용됩니다.

## 3 | 결격사유

- 응시결격사유 등: 채용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인사 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사회서비스원에서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사회서비스원에서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사회서비스원에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중사자)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선발 기준

### ○ (1차) 서류전형

- 전형대상: 최종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평가방법: 임용자격기준 적격 여부
- 합격기준: 임용자격기준 적격자 전원합격

### ○ (2차) 면접전형

- 전형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항목: 총 3개 항목(50점 만점)
  - 업무수행능력 20점, 조직적응력 20점, 종합평가 10점
- 합격기준: 총점(50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30점) 중 고득점자 선발  
단, 30점 미만은 불합격
- 동점자 처리기준
  - 무기명 투표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취업 지원대상자 우선 합격자 선발
- 면접방법: 집단면접(개인당 5분 ~ 10분 내외)
- 예비합격자(차순위자) 선발
  - 유효기간: 임용예정자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 면접전형 3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결정(3배수 이내)

## 5 전형일정

###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원서접수)	2026. 6. 4.(목) ~ 2026. 6. 14.(일) [2026. 6. 4.(목) 09:00~ 2026. 6. 14.(일) 18:00까지]	채용사이트 접수
1차전형(서류심사)	2026. 6. 17.(수)	
1차전형 합격자 공고	2026. 6. 22.(월)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2026. 6. 24.(화) 12:00까지	채용사이트
2차전형(면접심사)	2026. 6. 25.(목)	
임용예정자 공고	2026. 6. 26.(금)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임용예정일	2026. 7. 1.(수)	

※임용예정일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예정일(휴일 제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채용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합격자 순으로 채용을 진행함.

## 6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6. 4.(목) ~ 6. 14.(일) 18:00까지
- 접수방법: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채용사이트 접수(<https://ggpass.recruiter.co.kr>)

###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보조인력 지원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6. 6. 5.(금) ~ 6. 24.(수) 12:00까지
- 접수방법: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채용사이트 제출(<https://ggpass.recruiter.co.kr>)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서 업로드 해야 함.

#### - 제출서류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가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일체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을 반드시 삭제(마스킹)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입사 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허위 기재로 간주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채용사이트 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 이후 작성된 지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7 |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 지원자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부담으로 합니다.
- 본 계획 및 일정 등은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휴일 제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채용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보조 인력 지원 사업지침(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 최초 임용 후 우리원의 방침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포함) 채용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 공고분야 응시자는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임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recruit@gg.pass.or.kr.)하고 기 제출 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gg.pass.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은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답변에 대하여 우편수신을 신청할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팀 인사담당(031-882-8579)